

#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,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소·운영하여 왔음
- 나. 전문성 있는 민간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운영·관리함으로써,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활용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왔음
- 다. 2013년 7월,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최초로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,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1)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## 2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
- 다양한 민간단체,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·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
  - ⇒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### 1)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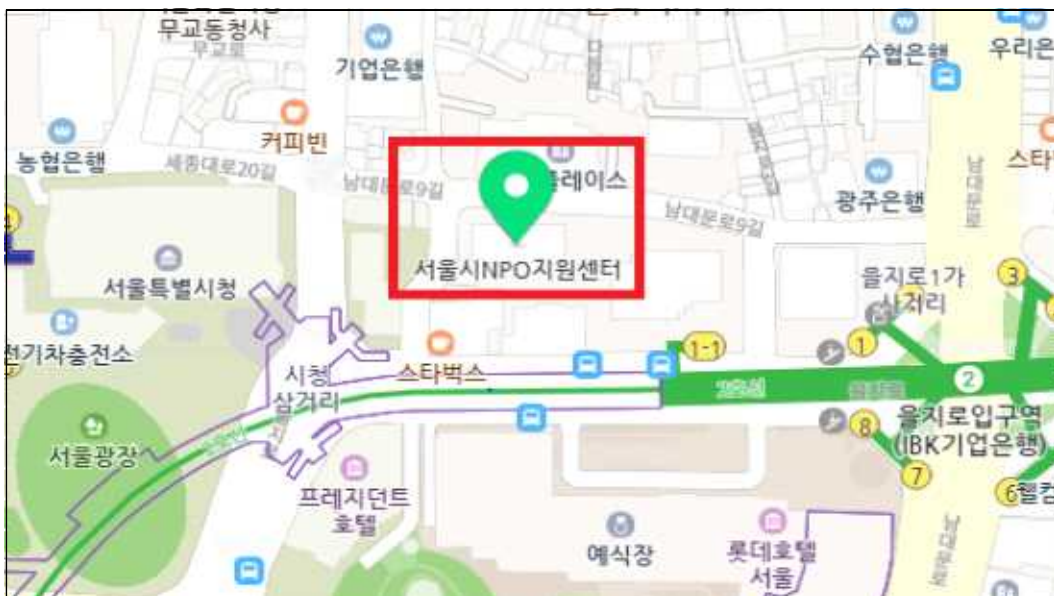
-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

### 2) 위탁사무 내용

- 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②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
- ③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
- ④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
- ⑤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·컨설팅
- ⑥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⑦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·연구
- ⑧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⑨ 그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명 칭 : 「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」
- 개관시기 : 2014년 10월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, 1·2층(을지로1가, 부림빌딩)
- 시설규모 : 전용 867.4㎡
  - 1층: 열린 공간(310㎡, 약93평) ⇨ 대강당, 전시공간 등
  - 2층: 사무 공간(557㎡, 약169평) ⇨ 협업공간, 회의실, 사무실, 교육장 등



<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치도 >

##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2019.11.15. ~ 2022.11.14.)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
#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19년 소요예산 : 2,282,835천원
  - 민간위탁금 2,283백만원 (인건비 845, 운영비 412, 사업비 1,026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

- ※ 「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라, 재위탁(공개모집)할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없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센터의 위탁)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「2019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」

※ 작성자 : 민관협력담당관 시민협력팀 문성훈 (☎2133-6561)